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구성, 안건 상정,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진행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하는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2. 공소 제기 여부
3. 상소 제기 여부
4.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공소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

④ 위원회의 소집, 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공소청에 간사와 담당 직원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사건관계인의 사건심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건관계인(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대해 이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건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한 후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신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의 사건심의 신청 등) ①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신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지방공소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심의 요청 건의가 있는 경우 광역공소청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안건 상정) ① 광역공소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사건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사건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구속영장 청구기간, 공소시효, 상소기간 등 법정기간 내에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건심의 신청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광역공소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광역공소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7조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사건심의 신청의 취하) ① 사건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 또는 주임검사는 사건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사건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하가 있는 경우 사건심의 절차를 종결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의 구성·운영)

- ① 광역공소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관계인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법정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 3.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나,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제출) 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각각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간사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거나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서 및 심의와 관련된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5조(심의 결과의 통지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사건심의 를 종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제1항 또는 제 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신청인이나 주임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로 하되, 신청인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한다.

③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심의를 요청한 지방 공소청장 또는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한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④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심의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수사사항 등 사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공소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사건관계인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계1	[] 피의자(피고인)		관계2	[] 본인	
		[] 고소인			[] 변호인	
[] 기관고발인		[] 대리인				
[] 피해자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죄 명		외 명			
심의대상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 제기 여부					
	[] 상소 제기 여부					
신청인은 위와 같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공 소 청 장 귀 하						

[별지 제2호]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검사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사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죄 명	외 명	
심의대상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 제기 여부		
	[] 상소 제기 여부		
검사는 위와 같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공소청 검사 (서명 또는 인) ○○지 방 공 소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

사건심의위원회 취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취 하 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 / 직위(직급) ※ 취하인이 검사인 경우에만 기재		
	관계1	[] 피의자(피고인) [] 고소인 [] 기관고발인 [] 피해자	관계2	[] 본인 [] 변호인 [] 대리인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죄 명		외 명		
취 하 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공 소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수 신 : ○○○ 귀하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죄 명	외 명

귀하께서 심의를 신청하신 사건에 대하여 2026. .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광역공소청장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0000